



Department of Treasury
Internal Revenue Service
Austin, TX 73301-0030

통지 번호	CP503
과세 연도	2006
통지 일자	2009년 2월 16일
사회복지 보장 번호 (SSN)	999-99-9999
연락처	전화번호 1-800-829-0922
귀하의 발신자 ID	1234
페이지	1 / 4

01899954671
JAMES & KAREN Q. HINDS
22 BOULDER STREET
HANSON, CT 00000-7253

2 차 독촉장: 귀하에게 2006년분 미납 세액이 있습니다

납부해야 할 금액: \$9,533.53

이전에 통보한 바와 같이, 국세청 기록에 따르면 귀하는 200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을 미납하였습니다 (Form 1040). 2009년 2월 26일까지 \$9,533.53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 금액이 증가하고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청구내용 요약

미납 세액	\$9,444.07
미납 과태료	34.98
이자 부과액	54.48
2009년 2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	\$9,533.53

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

즉시 납부

- 추가 과태료와 추가 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금액 \$9,533.53를 2009년 2월 26일까지 납부하십시오.

뒷 면에 계속...



James & Karen Q. Hinds
22 Boulder Street
Hanson, CT 00000-7253

통지 번호	CP503
통지 일자	2009년 2월 16일
사회복지 보장 번호	999-99-9999

납부

- 수표나 환의 수취인은 United States Treasury로 하십시오.
- 지급 수단과 서신에는 사회복지 보장 번호 (XXX-XX-XXXX), 과세 연도 (2006) 및 양식 번호(1040)를 기입하십시오.

2009년 2월 26일까지
납부해야 할 금액

\$9,533.53

INTERNAL REVENUE SERVICE
AUSTIN, TX 73301-0030
01899954671

0000 0000000 000000000000 00000000 0000

통지 번호	CP503
과세 연도	2006
통지 일자	2009년 2월 16일
사회복지 보장 번호 (SSN)	999-99-9999
페이지	2 / 4

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– 계속

즉시 납부 -계속

- 현재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, 지금 가능한 금액만큼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추후 분할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. www.irs.gov를 방문하여 키워드 “tax payment options”를 검색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:
 - 분할납부 및 납부 동의 -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귀하가 자격이 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
 -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
 - 금여에서 공제
 - 신용카드 납부
 - 또는 1-800-829-0922 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선택을 상의하십시오.
- 지난 14일 이내에 잔액을 모두 납부하였거나 분할납부 조치를 취하였다면 본 통지서를 무시하십시오.

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

- 2009년 2월 26일까지 \$9,533.53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 금액이 증가하고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납부 요청을 하지 않으면, 국세청은 언제든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연방세 유치권 통보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- 유치권이 설정되면 귀하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세금 유치권은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도 표시되므로— 귀하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— IRS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우선 압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귀하의 채권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통지됩니다.
- 귀하가 세무부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압류(“강제징수”)권을 갖습니다.

과태료

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James & Karen Q. Hinds
22 Boulder Street
Hanson, CT 00000-7253

통지 번호	CP503
통지 일자	2009년 2월 16일
사회복지 보장 번호	999-99-9999

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1-800-829-0922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.irs.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

귀하가 서신을 동봉하는 경우 여기를 체크하십시오. 모든 서신에는 사회복지 보장 번호 (XXX-XXX-XXXX), 과세 연도 (2006) 및 양식 번호 (1040)를 기입하십시오.

오전
 오후

오전
 오후

기본 전화번호

통화 가능 시간

추가 전화번호

통화 가능 시간



연락처 정보

통지 번호	CP503
과세 연도	2006
통지 일자	2009년 2월 16일
사회복지 보장 번호 (SSN)	999-99-9999
페이지	3 / 4

과태료 -- 계속

미납 과태료	항목	금액
	미납 과태료	\$34.98

납기 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월 0.5%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과태료 최대 금액은 미납금액의 25%입니다. 1개월이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. (내국세법 제 6651항)

과태료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-800-829-0922번으로 문의하십시오.

과태료의 면제 또는 축소

국세청은— 경제적 어려움, 가족의 사망, 자연재해로 인한 재무 기록의 손실 등의— 상황으로 인하여 적시에 납세자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.

국세청이 귀하의 과태료 부과액을 면제 또는 삭감해주도록 고려해주기를 바라시면 아래 조치를 취하십시오:

- 재고할 과태료 부과액의 종류를 명시 하십시오(예: 2005년도 지연 신고 과태료).
- 각 과태료 부과액에 대하여 재고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.
- 귀하의 진술서에 서명하고 저희에게 우송하십시오..

저희가 귀하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후, 귀하의 설명 내용이 과태료를 삭감 또는 면제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
IRS 의 잘못된 서면조언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

IRS 의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, 다음 기준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:

- 귀하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IRS 에 서면 조언을 요청했는지 여부
- 귀하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IRS 에 제공하였음
- 귀하가 IRS 로부터 서면 조언을 받았음
- 귀하가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그 조언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음

IRS 의 잘못된 서면 조언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를 요구하려면 '환급 청구 및 경감 요구서' (Form 843)를 작성하여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IRS 서비스 센터로 제출하십시오. 이 양식을 원하거나 귀하의 해당 IRS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면 www.irs.gov 를 이용하거나 1-800-829-092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통지 번호	CP503
과세 연도	2006
통지 일자	2009년 2월 16일
사회복지 보장 번호 (SSN)	999-99-9999

페이지 4 / 4

이자 부과액

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부터 세액 완납일까지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자는 해당되는 과태료를 포함하여 미납금액이 있는 한 부과됩니다. (내국세법제 6601 항)

항목	금액
----	----

총 이자	\$54.48
------	---------

아래 표는 귀하의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사용된 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자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-800-829-09225 번으로 문의하십시오.

기간	이자율
2006.7.1 ~ 2007.12.31	8%
2008.1.1 ~ 2008.3.31	7%
2008.4.1 ~ 2008. 6.30	6%
2008. 7. 1 ~ 2008. 9.30	5%
2008. 10. 1 ~ 2008. 12.31	6%
2009. 1. 1 일 이후	5%

추가 정보

- 참고 사이트: www.irs.gov/cp503.
- 세무 양식, 지침 및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.irs.gov를 방문하거나 1-800-TAX-FORM (1-800-829-3676)으로 전화하십시오.
- 동봉한 다음 문서들을 검토하십시오:
 - IRS 강제징수 절차 (간행물 594)
 - 강제징수 이의 신청권 (간행물 1660)
- 본 통지서는 귀하의 기록 서류로 보관하십시오.

국세청은 본 통지서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 각 통지서에는 귀하의 공동 계좌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주의사항: 미납액은 한 번만 납부하십시오.

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.